

의안번호	제876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오영탁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안치영,
조성태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
(2024.11.29.)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
명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가능(안 제14조제8항)
 -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
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 -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
으며,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
- 나. 관련부서 : 행정국 행정운영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8항 중 “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”를 “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u>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</u>	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u>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</u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~⑥ (생략)

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치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

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

⑨~⑭ (생략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정비에 따라 삭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